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인재선발제도 출신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33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9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을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21.
- (3) 회 부 일 : 2025. 2.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방에 소재하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여 해당 지역 정주를 유도함으로써 지방 보건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지역인재선발제도를 통해 선발된 지역인재가 실제 해당 지역에 정주하여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인재선발제도가 지역 보건 의료인력 확보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보건 의료인력의 근무지 현황을 실태조사 사항에 포함시켜 그 결과가 보건 의료인력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6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항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학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지 현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학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지 현황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7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각 호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¹⁾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음.²⁾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지역인재선발제도’를 통해 선발된 지역인재가 실제 해당 지역에 정주하여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도 포함함으로써, 지역인재선발제도가 지역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3.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2024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현재 연구용역 수행중이며, 2025년말까지 발표할 예정임

□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³⁾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 졸업생을 선발하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⁴⁾으로,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약계열 학과에서는 지역인재비율이 40% 이상⁵⁾이 되도록 선발하여야 함.⁶⁾

동 제도는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인재의 양성을 활성화하여 지방과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지방대육성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음.⁷⁾

-
-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②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5) 강원권 및 제주권은 20%. 구체적인 비율은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별표] 참조. [참고자료1]
- 6) 의약계열의 지역인재선발비율은 2022학년도까지 권고사항이었으나, 2021년 법개정을 통해 2023학년도부터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음.
- 7) 2014년 지방대육성법은 3개의 제정법률안(이용섭의원안, 김세연의원안, 박혜자의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중 지방대학의 의과대학 등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이용섭의원안과 김세연의원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두 법안 모두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유는 적시되지 않음.

-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의과대학 등에 해당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막는 동시에, 해당 지역 학생들의 경우 타 지역 출신 학생들에 비해 졸업 후 타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적어 해당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음.⁸⁾

□ 그러나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방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음.⁹⁾

- 2023년 당시 서동용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비수도권 의학교육(치대·한의대 등 포함) 졸업자 중 상세 취업정보가 확인된 5,816명 중 43.1%에 해당하는 2,505명이 수도권에 취업하였고, 출신 대학 소재지에 취업한 비율은 34.7%에 불과하여 지방의대에서 양성된 인력의 상당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참고자료2]

- 2021년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지역인재 요건에 기존의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일 것’에 더하여 ‘비수도권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것’이 추가되었는데,¹⁰⁾ 그 배경을 “수도권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방의대에 입학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수도권으로 떠나는

8) 제19대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안(이용섭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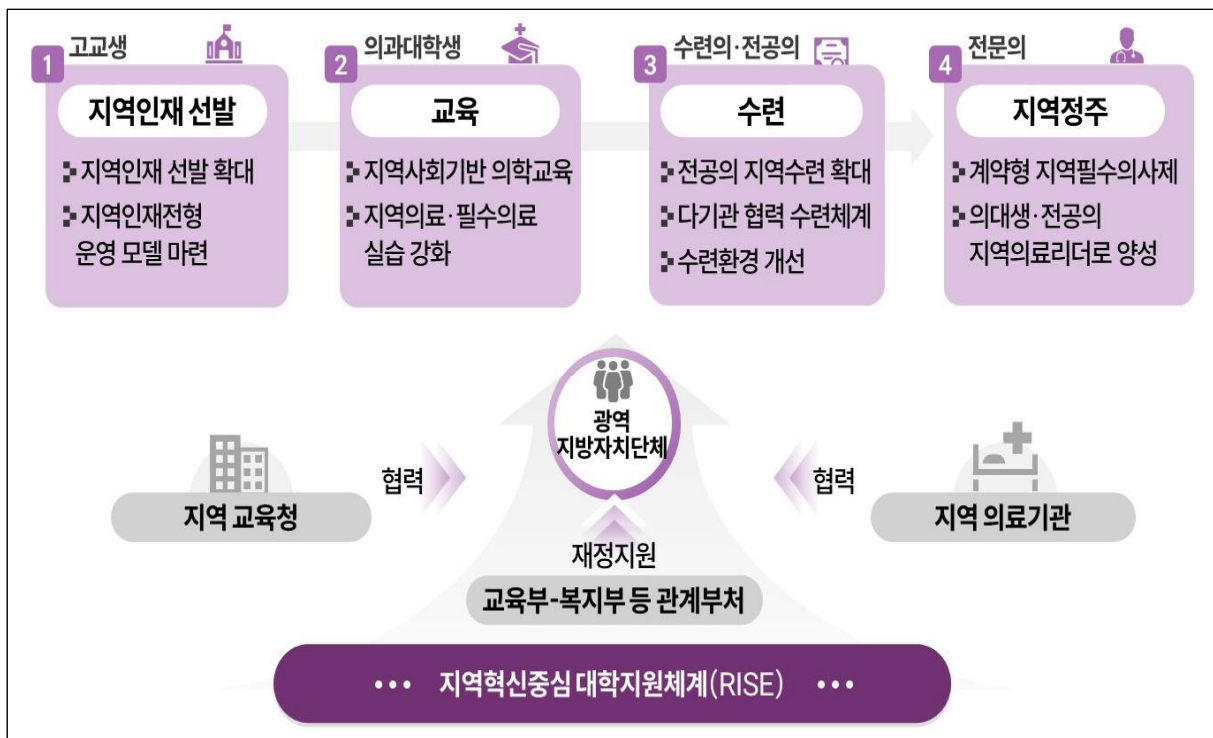
9) [22031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0)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에 따르면 전국 38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 모집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2020학년도 기준 의과대학 중 4개 학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 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음”을 개정의 배경으로 들고 있음.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함.¹¹⁾

-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에서 길러낸 의료 인력의 지역 정주 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¹²⁾를 통해 의대 입학부터 지역 정주까지 선순환 체계 확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였음.¹³⁾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한 인력 양성 모델 >



자료: 관계부처 합동

1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사의 근무지역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및 이동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2022.11.

1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라 한다)”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로,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되었음.

13) 관계부처 합동,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2024.9.10.

□ 그러나 지역인재 특별전형 출신 학생의 지역정착률에 대한 자료가 없어 관련 정책 수립 시 지역인재선발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위의 서동용의원실 자료 등을 통해 지방의대 양성 의료인력의 유출 정도를 유추해볼 수는 있으나, 해당 자료는 입학전형에 따른 구분이 없어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움. 각 의대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비율만 공개할 뿐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해당 전형 선발자의 졸업률, 수련병원, 지역정착률, 취업지 등에 관한 자료는 수집 또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¹⁴⁾

□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지방인재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지 현황을 추가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행법상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활동 현황,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현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위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 입학정보를 보유한 교육부의 협조가 있다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¹⁵⁾ 최근 실시한 2021년 실태조사에서는

14) 세계일보, “‘의사되면 서울로’... 지역의대 졸업하면 10명 중 3명만 남아 [심층기획-지역인재전형 10년, 현실은]”, 2024.3.12.

1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3.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인재전형 출신의 근무지 현황은 조사되지 않음.

- 특히 의료인력 양성과정이 통상 10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¹⁶⁾ 2015년 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의사인력 양성 및 수련 과정>



자료: 보건 의료인력 실태 조사(2021)

- 이에 대하여, 지역인재 특별전형 졸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며, 보건 의료인의 실태조사를 특정 입학전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근무현황에 대한 국가의 감시로서 형평성의 문제를 수반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¹⁷⁾

- 다만 실태조사 결과를 지역인재 특별전형 졸업자의 해당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사용하는 형태의 활용방식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6) 의과대학 입학 시 예과 2년, 본과 4년을 통해 일반의로 개업할 수 있으며,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칠 경우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과정이 추가됨.

17) 대한의사협회

- 참고로,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지역인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근무지역 등 취업현황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음.¹⁸⁾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찬성)

-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지역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른 법률에 근거한 제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2) 교육부(찬성, 일부수정)

- 의약계열(의·치·한·약·간) 지역인재 의무선발제도를 통해 선발된 지역인재가 실제 해당 지역에 정주하여 근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실태조사 대상을 「지방대 육성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약계열 지역인재 의무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에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필요.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119호,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3) 대한의사협회(반대)

-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 등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도 어긋나 제도 자체의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지방 보건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실효성이 낮음.
- 지역인재선발제도에서는 해당 학교 소재지 거주를 입학요건으로서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역인재의 졸업 후 근무지 현황까지 파악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임.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지역인재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지 현황을 실태조사 사항에 포함시켜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역을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지역의료시스템을 갖추어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함.

(5) 대한작업치료사협회(찬성)

-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역 의료인력의 정주실태를 파악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적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본 법안 개정에 찬성함.

(6)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찬성, 일부수정)

-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지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한 ‘입학생’이 아닌 ‘졸업생’의 근무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실제적인 기준인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제10조 관련)

1. 지방대학(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한다)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4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4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0%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0%
5)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2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20%

나. 간호대학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3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0%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30%
5)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15%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5%

다. 한약학과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40%

2.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법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15%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15%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5%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5%
5)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5%

나.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2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0%
5)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5%

다. 한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2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법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선발인원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학생 최소 선발인원
50명 이하	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	4명
200명 초과	5명

4. 제1호 및 제2호의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가. 제1호의 최소 입학 비율 = $\frac{\text{모집단위별 입학 전체 인원 중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인원}}{\text{모집단위별 입학 전체 인원}}$

나. 제2호의 최소 입학 비율 = $\frac{\text{전문대학원 입학 전체 인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인원}}{\text{전문대학원 입학 전체 인원}}$

[참고 2] 2017년~2021년 의대 졸업자 및 취업지 현황 등

[표 1] 2017년~2021년 의대 졸업자 및 취업지 현황

학교 소재지	졸업자(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명)		분석대상자(명)		근무지역별 취업자 및 비율 (명)			
							수도권		비수도권	
계	9,530	100.0%	8,530	100.0%	8,501	100.0%	4,901	57.7%	3,600	42.3%
서울	2,772	29.1%	2,471	29.0%	2,461	28.9%	2,193	89.1%	268	10.9%
인천	58	0.6%	39	0.5%	38	0.4%	34	89.5%	4	10.5%
경기	199	2.1%	186	2.2%	186	2.2%	169	90.9%	17	9.1%
부산	976	10.2%	910	10.7%	906	10.7%	310	34.2%	596	65.8%
대구	467	4.9%	439	5.1%	439	5.2%	112	25.5%	327	74.5%
광주	744	7.8%	603	7.1%	602	7.1%	121	20.1%	481	79.9%
대전	606	6.4%	533	6.2%	530	6.2%	229	43.2%	301	56.8%
울산	195	2.0%	185	2.2%	185	2.2%	149	80.5%	36	19.5%
세종	0	0.0%	0	0.0%	0	0.0%	0	0.0%	0	0.0%
강원	1,112	11.7%	1,006	11.8%	1,003	11.8%	636	63.4%	367	36.6%
충북	203	2.1%	191	2.2%	191	2.2%	59	30.9%	132	69.1%
충남	656	6.9%	613	7.2%	613	7.2%	364	59.4%	249	40.6%
전북	760	8.0%	616	7.2%	611	7.2%	271	44.4%	340	55.6%
전남	0	0.0%	0	0.0%	0	0.0%	0	0.0%	0	0.0%
경북	526	5.5%	497	5.8%	495	5.8%	151	30.5%	344	69.5%
경남	254	2.7%	239	2.8%	239	2.8%	103	43.1%	136	56.9%
제주	2	0.0%	2	0.0%	2	0.0%	0	0.0%	2	100.0%

1. 자료기준일 : 17.12.31.~21.12.31.
2. 졸업자 : 전국 대학 학제 의학계열 졸업생 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제외 - 제주대, 동국대 경주, 건국대 충주 등 의전원에서 의과대학 전환한 경우 의과대학 졸업생 수가 적음)
3. 분석대상자 : 전국 대학 학제 의학계열 졸업생이면서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중 가입된 회사가 1개이고, 상세 취업정보가 확인된 취업자 수
4. 근무지역별 취업자 : 전국 대학학제 의학계열 분석대상자면서 근무지역별 취업자 수
5. 자료제출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에서 추출)
6. 한국교육개발원 전공분류자료집 기준 소계열(의학) 학과 기준으로 추출하여 통상적인 의과대학 외의 학과가 포함되었을 수 있음.

[표 2] 2017년~2021년 의대 졸업자 취업지(소재지별, 지역별) 현황

학교 소재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의대 소재지 취업자 현황		의대졸업자 지역 별 취업지 현황	
계	4,901	57.7%	3,906	45.9%	153	1.8%	842	9.9%	3,600	42.3%	4,215	49.6%	8,501	100.0%
서울	2,193	89.1%	2,041	82.9%	13	0.5%	139	5.6%	268	10.9%	2,041	82.9%	3,906	45.9%
인천	34	89.5%	6	15.8%	26	68.4%	2	5.3%	4	10.5%	26	68.4%	153	1.8%
경기	169	90.9%	17	9.1%	24	12.9%	128	68.8%	17	9.1%	128	68.8%	842	9.9%
부산	310	34.2%	245	27.0%	10	1.1%	55	6.1%	596	65.8%	413	45.6%	561	6.6%
대구	112	25.5%	100	22.8%	3	0.7%	9	2.1%	327	74.5%	252	57.4%	640	7.5%
광주	121	20.1%	95	15.8%	6	1.0%	20	3.3%	481	79.9%	323	53.7%	383	4.5%
대전	229	43.2%	208	39.2%	7	1.3%	14	2.6%	301	56.8%	237	44.7%	271	3.2%
울산	149	80.5%	142	76.8%	5	2.7%	2	1.1%	36	19.5%	13	7.0%	62	0.7%
세종	-	-	-	-	-	-	-	-	-	-	-	-	2	0.0%
강원	636	63.4%	385	38.4%	38	3.8%	213	21.2%	367	36.6%	216	21.5%	263	3.1%
충북	59	30.9%	57	29.8%	1	0.5%	1	0.5%	132	69.1%	96	50.3%	141	1.7%
충남	364	59.4%	224	36.5%	2	0.3%	138	22.5%	249	40.6%	197	32.1%	339	4.0%
전북	271	44.4%	212	34.7%	15	2.5%	44	7.2%	340	55.6%	220	36.0%	349	4.1%
전남	-	-	-	-	-	-	-	-	-	-	-	-	215	2.5%
경북	151	30.5%	109	22.0%	1	0.2%	41	8.3%	344	69.5%	16	3.2%	144	1.7%
경남	103	43.1%	65	27.2%	2	0.8%	36	15.1%	136	56.9%	36	15.1%	223	2.6%
제주	0	0.0%	0	0.0%	0	0.0%	0	0.0%	2	100.0%	1	50.0%	7	0.1%

1. 의대 소재지 취업자 현황 : 해당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 취업한 현황
2. 의대졸업자 지역별 취업지 현황 : 2017년 ~ 2021년 의대 졸업생의 지역별 취업인원 현황

※ 자료: 제21대 국회의원 서동용 보도자료(2023.10.7.)에서 재인용